

춘천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3484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3484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19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16.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1982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특정인인 원고를 상대로 1:1 투자자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배성준, 판사 허경은